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9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 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부당이득 수익자에게 제공한 가입자, 요양기관 등에게 해당 징수금의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법 제49조 요양비 의료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재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처방전 내용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법 제51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몸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특성상 수급자가 동의하면 공단부담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해 불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제741조, 제750조)을 적용하여 민사소

송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그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함(안 제57조제3항 및 제104조제1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제49조제 1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험급여가 실시된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 2.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 3. 제1호의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기 수입·제조·판매자 등의 부당이득 연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생 략)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 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 증명서를 양도 · 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 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 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 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 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 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 고 ·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 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 서를 양도 · 대여하여 다른 사 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 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제49조제1항의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수 입 · 제조 · 판매하는 자의 부정 한 행위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 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 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 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있다.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3. 제1호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

②·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